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2685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4. D

5.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6. G

7. H

8.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변론 종결 2015. 9. 2.

판결 선고 2015. 9. 23.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216,405원 및 그 중 795,559,021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G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4. 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G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5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H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14. 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H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50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 3항 및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이하 '피고 부림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4. 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3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8. 30.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788,424,000원, 보증기한은 2014. 8.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C, D,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제9조(보증채무 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피고 A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8.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그 변제기를 2014. 8. 29.로 정하여 985,53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A는 2014. 2. 27. 이 법원 2014회합3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28. 중소기업은행의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795,559,021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657,384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와 피고 G, H, 부림저축은행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 A는 2014. 1. 24.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부림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부림저축은행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2342호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는 피고 A, 근저당권자는 피고 부림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는 2014. 2. 12. 피고 H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H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5072호로 채권최고액은 5억 원, 채무자는 피고 A, 근저당권자는 피고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A는 2014. 2. 24. 피고 G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G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G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5071호로 채권최고액은 4억 원, 채무자는 피고 A, 근저당권자는 피고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E, 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H, 부림저축은행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 E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96,216,405원(= 795,559,021원 + 657,384원) 및 그 중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인 795,559,021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4.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6. 16.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G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G와 피고 A 사이의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G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G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50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H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피고 H과

피고 A 사이의 2014. 2.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4. 3. 28.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3. 8. 30. 체결된 것으로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A는 2010년 서울 서초구 I에서 수원시 장안구 J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무리하게 부지를 매입하였고,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하였던 광산개발사업에서 현금이 회수되지 못하여 2012년경부터는 운송기사들에 대한 운송비 지급을 지연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 1.경에는 영업사원과 운송기사 등 영업조직의 50%가 이탈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H와 피고 A 사이의 위 2014. 2.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던 점, ③ 이후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는 2014. 2. 27.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실제로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2014. 4. 17.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총 자산이 합계 108억 8,700만 원, 부채가 166억 9,300만 원으로 조사되어 부채가 자산을 58억 600만 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피고 H와 피고 A 사이의 위 2014. 2.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 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추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2013.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A의 자산이 18,840,460,390원, 부채가 12,519,251,981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A의 제22기 재무제표(을사 제3 내지 6호증)를 근거로 피고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재무제표의 내용은 피고 A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조사된 피고 A의 자산상태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한 피고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사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이 2011. 5. 2.부터 2013. 11. 1.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94,64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설령 피고 H이 피고 A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가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인 2014. 2. 12. 자신의 채권자들 중 1명인 피고 H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피고 A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H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H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H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H이 2011. 5. 2.부터 2013. 11. 1.까지 피고 A에게 합계 394,64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H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동생이고,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 A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피고 A의 자산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H이 피고 A에게 마지막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2013. 11.

1.임에도 피고 H과 피고 A는 피고 A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인 2014. 2. 12.에 이르러서야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H 명의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피고 A의 피고 H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 H으로서도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피고 A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H에 대한 위 약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H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H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H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4. 2. 24. 접수 제50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와 피고 부림저축은행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부림저축은행이 2011. 2. 9. 피고 A에게 70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1. 2. 9. 접수 제3149호로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3. 7. 25. 피고 A에게 3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위 ①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후 2013. 9.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76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③ 피고 A는 2013. 12. 23.경 피고 부림저축은행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국유지인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면서 그 매수대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④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피고 A가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에 피고 A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013. 12. 30.경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피고 A가 장차 취득하게 될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 A는 2013. 12. 24.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50,37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부림저축은행은 2014. 1. 3. 피고 A로부터 85,408,900원을 송금받아 여기에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액 139,925,000원을 합한 225,333,900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 ⑥ 피고 A는 2014. 1. 10.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4. 1. 24. 피고 부림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④항과 같은 약정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부림저축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기존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피고 부림저축은행 역시 피고 A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여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출하면서 피고 A가 새로 취득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출금액의 130% 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다음, 실제 피고 A가 위 대출금으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지체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A와 피고 부림저축은행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기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의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실행된 신규 대출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제적 목적이 정당하고 실현수단 역시 상당성을 갖고 있어, 이를 가리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부림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D, E,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종원

판사한동석

판사박민

별지